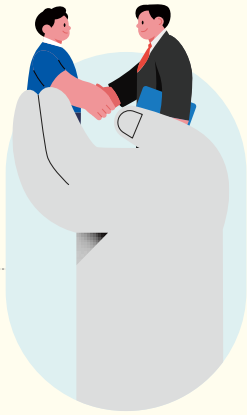




재도전지원본부
www.rechallenge.or.kr



사업정리 및 폐업 실무 가이드북

법인·개인 도산제도 및 폐업절차 완벽정리



사업정리 및 폐업 실무 가이드북

법인·개인 도산제도 및 폐업절차 완벽정리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의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끝이 아닌 자산으로, 시작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데에는 큰 용기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정리에는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수반되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지식과 도움이 필요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가 성공의 자산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정리 및 폐업 실무 가이드북』은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담아 발간된 실무 안내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인 청산, 이해관계 정리 등 복잡한 사업정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원활한 사업정리와 신속한 재도전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책자는 사업 정리 과정에서 기업인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실무 환경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사업 정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제도를 설명하고 제도별 차이점과 나에게 맞는 선택 기준을 알기 쉽게 제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폐업 절차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실제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유의사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 정보를 수록하여 사업정리부터 재도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기 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참고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길잡이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사업 정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업정리 및 폐업 실무 가이드북』이 사업정리를 앞둔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2026년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

김익준



책을 펴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 김일호 • 2



PART 1 사업정리 법률제도

I. 법인회생 제도

01 법인회생 제도 개관	• 8
02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11
03 법인회생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14
04 법인회생 제도의 장·단점	• 17
05 법인회생절차의 단계별 진행	• 20
06 회생계획 인가요건	• 31
07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 34
08 회생절차 폐지 및 후속 조치	• 37

III. 개인회생 제도

01 개인회생 제도 개관	• 56
02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59
03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62
04 개인회생 제도의 장·단점	• 63
05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진행	• 65
06 개인회생 절차 폐지	• 71

II. 법인파산 제도

01 법인파산 제도 개관	• 40
02 법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42
03 법인파산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45
04 법인파산 제도의 장·단점	• 47
05 법인파산절차의 단계별 진행	• 49
06 동시폐지	• 54

IV. 개인파산 제도

01 개인파산 제도 개관	• 72
0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75
03 개인파산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78
04 개인파산 제도의 장·단점	• 80
05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진행	• 82



PART 2 폐업 절차 로드맵

I. 폐업절차 개요 및 단계별 구조

01 폐업의 의의 및 유형	• 90
02 폐업절차 단계별 구조도	• 92

III. 업종별 주의사항

01 업종별 특수사항	• 117
02 업종별 폐업 체크리스트	• 120
03 참고 법령	• 124

II. 폐업 분야별 점검사항

01 세무 분야 점검사항	• 100
02 노무 분야 점검사항	• 103
03 법무 분야 점검사항	• 106
04 재무 분야 점검사항	• 111
05 기타 분야 점검사항	• 113

IV. 실제 사례 기반 FAQ

01 세무 관련 FAQ	• 125
02 노무 관련 FAQ	• 126
03 법무 관련 FAQ	• 128
04 재무 및 금융 관련 FAQ	• 130
05 법인 관련 FAQ	• 131
06 기타 FAQ	•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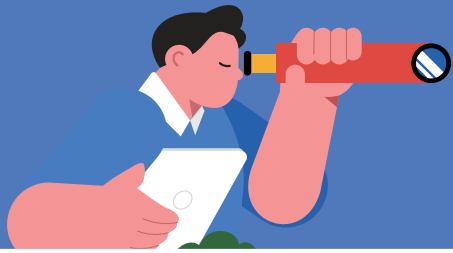
PART 3 관계기관 연락처

I. 세무 관련 기관	• 138
III. 법원 및 법률지원 기관	• 139
V. 기타 관련 기관	• 140

II. 노무 및 사회보험 관련 기관	• 138
IV. 중소기업 지원기관	• 139
VI. 이용 안내	• 141

PART 1

사업정리 법률제도



I. 법인회생 제도

- 01 법인회생 제도 개관
- 02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03 법인회생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04 법인회생 제도의 장·단점
- 05 법인회생절차의 단계별 진행
- 06 회생계획인가요건
- 07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08 회생절차 폐지 및 후속 조치

II. 법인파산 제도

- 01 법인파산 제도 개관
- 02 법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03 법인파산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04 법인파산 제도의 장·단점
- 05 법인파산절차의 단계별 진행
- 06 동시폐지

III. 개인회생 제도

- 01 개인회생 제도 개관
- 02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03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04 개인회생 제도의 장·단점
- 05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진행
- 06 개인회생 절차 폐지

IV. 개인파산 제도

- 01 개인파산 제도 개관
- 0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03 개인파산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 04 개인파산 제도의 장·단점
- 05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진행



I 법인회생 제도

01. 법인회생 제도 개관

1. 법인회생 제도의 의의

법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재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006년 4월 1일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회생절차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큰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는 청산 시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전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제도】

구분	법인회생	법인파산
목적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재건	채무자 재산의 환가·배당을 통한 청산
적용 대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회생 불가능한 기업
경영권	DIP 원칙(채무자 유지) 또는 관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 전권 행사
사업 운영	계속 영업 가능	원칙적 중단(일부 예외)
채권 변제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변제	재산 환가 후 일시 배당
소요 기간	평균 6개월~1년 6개월	평균 6개월~1년
법인 존속	존속	소멸
고용 유지	원칙적 유지	대량 해고 가능성
주요 장점	기업 존속, 고용 유지, 사업 정상화	신속한 절차, 명확한 종결
주요 단점	장기간 소요, 복잡한 절차	기업 소멸, 고용 상실

2. 법인회생 제도의 목적

법인회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효율적 회생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둘째, 채권자의 이익 보호입니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가져다주는 경우, 채권자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 안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입니다. 기업의 청산은 대량 실업을 초래하고 관련 산업에 연쇄적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의 존속은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회생가능한 기업의 조기 청산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합니다.

【최근 5개년 법인회생 신청 현황】

연도	신청 건수	인가 건수	인가율	평균 채무액
2020년	1,247건	856건	68.6%	324억 원
2021년	1,089건	742건	68.1%	298억 원
2022년	1,356건	931건	68.6%	312억 원
2023년	1,523건	1,048건	68.8%	287억 원
2024년	1,687건	1,156건	68.5%	295억 원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20~2024)

※ 인가율 = (인가 건수 ÷ 신청 건수) × 100

【업종별 법인회생 신청 현황(2024년 기준)】

업종	신청 건수	비율	주요 원인
제조업	487건	28.9%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감소
도소매업	372건	22.1%	온라인 전환 실패, 소비 위축
건설업	304건	18.0%	PF 부실, 공사비 증가
숙박·음식점업	253건	15.0%	코로나19 후유증, 임대료 부담
운수·창고업	134건	7.9%	물류비 상승, 유가 변동
기타 서비스업	137건	8.1%	경기 침체, 자금난
합계	1,687건	100%	-

3. 법인회생 제도의 기본원칙

법인회생절차는 다음의 기본원칙 하에 운영됩니다.

【법인회생 4대 기본원칙】

원칙	핵심 내용	법적 근거
법원 주도의 공정성	법원 감독하에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정	채무자회생법 제39조의2
채권자 평등	같은 순위 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 (담보권 등 법정 우선권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다수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회생계획안 가결 (회생담보권: 3/4 이상, 회생채권: 2/3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DIP 원칙	채무자(경영진)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관리처분권 보유(관리인 선임은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74조

⚙️ 법원 주도의 공정성 원칙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과 관리인의 업무수행을 통해 진행되며,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공정하게 조정됩니다. 법원은 절차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

같은 순위의 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담보권자, 공익채권자 등 법률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그 우선권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 다수결의 원칙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권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조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채무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일반회생과 가결요건이 동일하나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와 그 의결권액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소수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반대한 채권자들에게도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효력에 구속되도록 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 DIP(Debtor In Possession) 원칙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보유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리인 선임의 경우는 예외). 이는 기존 경영진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 영업력 등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02.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신청권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무자, 채권자 또는 주주 등이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 채무자의 신청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신청의 경우 이사회 결의(주식회사) 또는 사원총회 결의(유한회사)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자진 신청으로 개시됩니다.

⊕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신청은 법원이 개시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채무자 신청에 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개시결정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주주 등의 신청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권자	신청 요건	구비서류
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이사회(사원총회) 의사록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채권자·채무자 목록 사업계획서
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사실 존재 소명자료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 소명자료 파산원인 입증자료 채무자 재산 관련 자료
주주·지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파산원인 사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주식(지분) 보유 증명서 파산원인 소명자료 주주명부 또는 등기부등본

⚙️ 신청요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재무상태를 의미합니다.

⊕ 회생 가능성

채무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고, 적절한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관할법원

회생절차는 보통 채무자의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회생재판부) 또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광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이 회생사건을 취급합니다.

⚙️ 제출서류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채권액·담보권 유무 등 기재)
- 이해관계인목록(주주, 임원, 지분권자 등)
- 재산 및 영업상황에 관한 설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서류(이사회사록, 주주총회사록 등)

⊕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최근 3년간 세무신고서(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 주요 자산의 평가자료(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 주요 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약정서 등)
- 소송 및 강제집행 현황
- 조세 체납액 및 4대 보험 체납액 확인서

⚙️ 신청절차

⊕ 내부 의사결정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의결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법원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회생재판부 또는 회생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 자료 보완

법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합니다.

⚙️ 대리인 선임

회생절차는 법률 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서 작성, 절차 진행, 법원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법인회생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1. 신청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3만 원이며, 이는 소송가액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송달료

송달료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각종 결정문, 통지서 등을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소요됩니다(5,200원 × (4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법원에 예납하며, 부족 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관리인 보수 및 조사위원 보수

⊕ 관리인 보수

법원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 보수가 발생합니다. 보수액은 회생절차의 규모, 난이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관리인 보수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 진행중 채무자의 재산에서 수시 변제됩니다.

⊕ 조사위원 보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황,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을 통하여 충당됩니다. 예납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기준 보수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기준 보수
5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5,700만 원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1,800만 원	3,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7,700만 원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2,700만 원	5,000억 원 이상 7,000억 원 미만	9,200만 원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3,200만 원	7,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1억 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900만 원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1억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4,500만 원	2조 원 이상	1억2,000만 원 (1조 원당 1,200만 원 추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5,000만 원		

⚙️ 변호사 비용

회생절차 신청 및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규모, 복잡성, 채권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산정됩니다.

⊕ 착수금

신청 단계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통상 착수금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당 보수

일부 법무법인은 착수금과 별도로 시간당 보수(time charge)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기타 비용

⊕ 감정평가 비용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 비용

M&A, 출자전환 등의 과정에서 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용역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고비용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통상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2. 회생절차 소요기간

⚙️ 전체 절차 소요기간

법인회생절차는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통상 6개월~1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도, 이해관계인 간 이견, 법원의 업무 부담 등에 따라 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

⊕ (신청~개시결정) 1~2개월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서와 심문사항에 대한 보완 등을 기초로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시 전 조사를 통하여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해당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신청된 경우 수일 내에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지고, 개시결정은 통상 1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

⊕ (개시결정~관계인집회) 3개월~1년

개시결정 후 관리인은 재산 및 영업 상황을 조사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하며, 통상 개시결정 후 6~8개월 내에 관계인집회가 개최됩니다.

⊕ (관계인집회 제1기일~인가결정) 1~3개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요건을 심사한 후 인가결정을 선고합니다. 관계인집회가 여러 차례 진행되거나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확정) 2주~1개월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2주 후 확정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판단까지 수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기간 단축 및 장기화 요인

⊕ 기간 단축 요인

- 채무자의 적극적 협조 및 신속한 자료 제출
- 주요 채권자의 동의 및 협조
- 명확한 회생방안 및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
- 법원 및 조사위원의 신속한 업무 처리

⊕ 기간 장기화 요인

-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및 다수의 채권자
- 주요 채권자의 반대 및 이해관계 충돌
- M&A, 출자전환 등 복잡한 회생방안
- 자산 매각, 사업 양도 등 추가 절차 필요
- 소송 등 법적 분쟁 존재

04. 법인회생 제도의 장·단점

1. 법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무자 측면

⊕ 법적 보호 및 사업 계속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고(개시 전에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따름), 채무자는 법원의 보호하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실효 또는 중지되며, 경매절차도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감면 및 변제조건 완화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변제기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감면 대신 채무자 회사의 지분으로 출자전환될 수 있음). 실질적으로 '채무 액면가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차이만큼 채무규모가 감면됩니다.

⊕ 경영권 유지 가능성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DIP)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관리인이 되거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 기업 가치 보존

청산 시 자산을 급매각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을 방지하고, 영업권, 브랜드가치, 거래처 관계 등 무형자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측면

⊕ 회수율 증대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청산되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가 청산가치(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보다 큰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은 청산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청산 시 회수율이 매우 낮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상당 비율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거래관계 유지

채무자 기업이 존속함으로써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하청업체 등의 경우 주요 거래처의 청산은 자사 사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므로, 회생절차를 통한 거래 계속이 유리합니다.

⊕ 담보권 실행의 안정성

담보권자의 경우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나, 회생계획에서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경매보다 법원의 통제하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권리 실현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사회·경제적 측면

⊕ 고용 유지

기업이 존속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가 보전되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핵심 기업이 회생하는 경우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 생태계보존

주요 기업의 청산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 연관 기업에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존속은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회생가능한 기업이 청산되는 것은 경제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회생절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2. 법인회생 제도의 단점 및 한계

⚙️ 채무자 측면

⊕ 경영 자율성 제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중요 재산의 처분, 차입, 신규 투자 등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됩니다.

⊕ 비용 및 시간 소요

회생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관리인 보수, 조사위원 보수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회생절차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 구조조정 고통

회생계획 수행 과정에서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사업부문 매각 등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와의 마찰, 노동조합과의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측면

⊕ 권리행사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는 소송,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집단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권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 기회가 제한됩니다.

⊕ 변제 지연 및 감액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는 장기간(통상 5~10년)에 걸쳐 분할 변제되며, 이 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가 감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회수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 회생 실패 위험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대한 수행이 실패하여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 진행 기간만큼 회수가 지연되고 오히려 회수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운영상 한계

⊕ 도덕적 해이

회생절차가 채무 탕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경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으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 좀비 기업 양산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경제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부실기업이 연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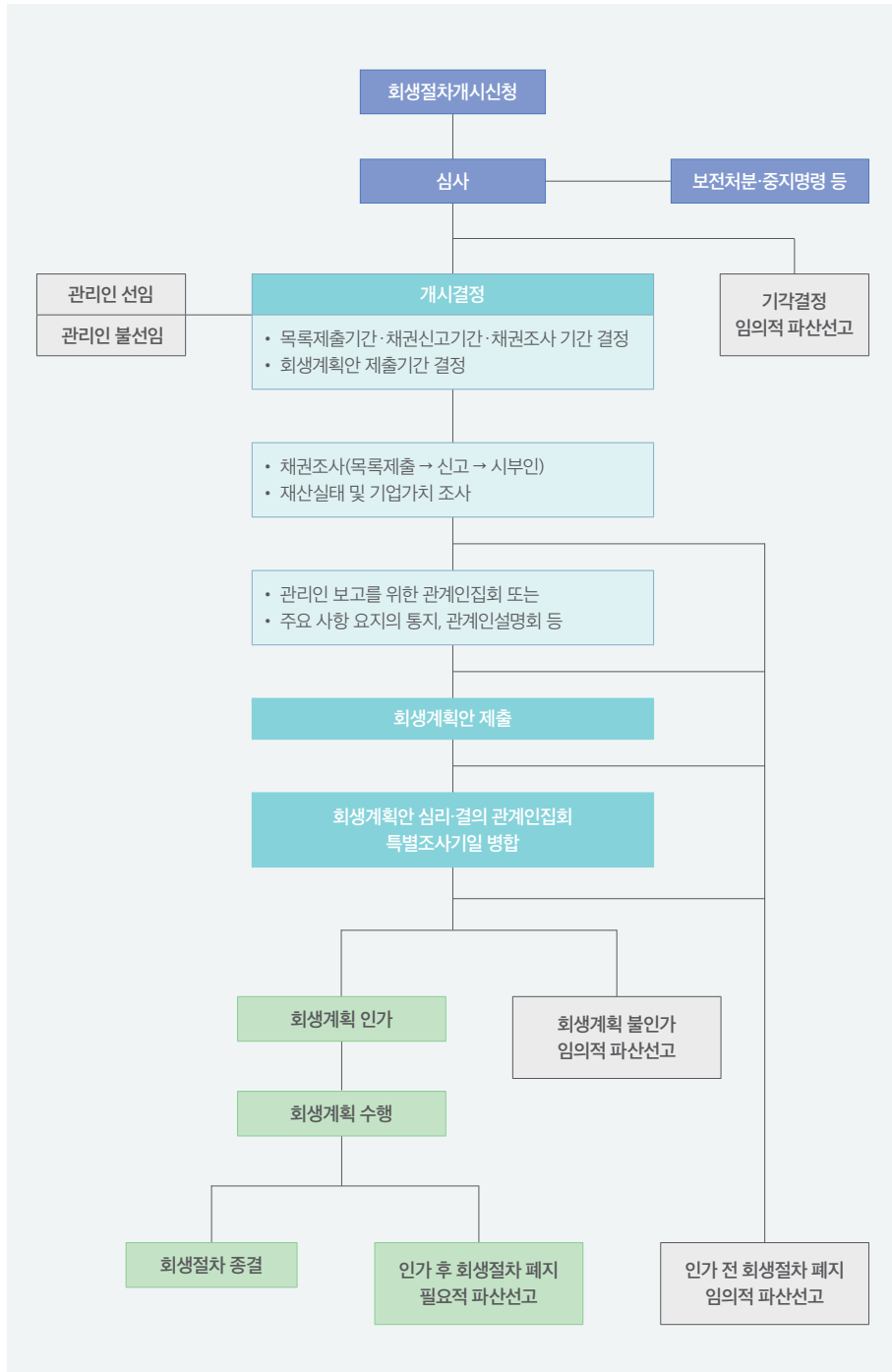
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액 채권자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법원의 업무 부담

회생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5. 법인회생절차의 단계별 진행

【회생절차 전체 흐름도】



1.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

⚙️ 신청 준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재무상황 파악

모든 채무(금융채무, 매입채무, 조세채무, 4대보험료 등)를 확인하고, 보유 자산(부동산, 무형자산 등)을 목록화합니다.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현재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 파악

모든 채권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 채권자별 채권액, 담보 유무, 우선권 여부 등을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채권자, 상거래채권자, 조세채권, 임퇴직금채권 등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 회생 가능성 검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고, 구조 조정을 통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절차보다 파산절차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 회생방안 구상

채무조정,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M&A,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 가능한 회생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합니다. 주요 채권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 자문

회생 전문 변호사와 절차, 비용,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신청 시기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 후 즉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보전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보전관리(제3자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보전 관리하게 함)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의 금지 또는 중지
- 채무자의 특정 행위(변제, 담보제공, 재산 처분, 신규 차입 등) 금지

⊕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다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금지
- 회생담보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금지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법원 회생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담당 재판부를 배정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단계**⚙️ 대표자 심문 및 법원의 심리**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신청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대표자 심문 이후 제출된 보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 주요 채권자, 조사위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개시결정**

법원은 개시요건이 충족되고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회생채권자목록 및 회생담보권자목록 제출기간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 채권조사기간
- 관리인 선임(채무자 또는 제3자)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기각결정

법원은 다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 회생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 개시결정의 공고 및 통지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공고사항은 관보 및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개시결정 연월일시
-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기간 및 장소
- 채권조사기간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및 장소

3.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의 선임**

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 또는 제3자 중에서 선임되며, 실무상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간주)되는 경우(DIP)

- 채무자가 자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 경영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정 악화가 아닌 경우
-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적인 경우
- 기존 경영진의 전문성과 사업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은 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선임되며,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됩니다.

- 채무자 대표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업무위반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중립적 제3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채권자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구체적으로 다음의 권한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처분
-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조사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 회생계획 수행
- 소송 수행

다만, 중요 재산의 처분, 대규모 차입, 중요 계약 체결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관리인의 의무

- **(선관 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
- **(공정 의무)** 모든 이해관계인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
- **(보고 의무)** 법원 및 관계인집회에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재산보전 의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가치를 유지해야 함

⚙️ 재산 및 영업 상황 조사

관리인은 취임 즉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황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이는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재산 조사

- 모든 자산(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 확인 및 평가
- 담보 설정 현황 파악
- 소송 및 강제집행 현황 파악
- 조세 체납 및 4대 보험료 체납 현황 확인

➕ 영업 상황 조사

- 사업 내용 및 조직 구조
- 매출 및 수익성 분석
- 주요 거래처 및 계약 관계
- 재고자산 및 생산설비 현황
- 인력 현황

➕ 부채 조사

- 모든채무(금융기관대여금채무,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임퇴직금채무 등) 확인
- 채권자별 채권액, 담보 유무, 우선권 여부 확인
- 보증채무 및 우발채무 확인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조사·확정

➕ 채권자목록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목록 및 회생담보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원인, 담보 등이 기재됩니다.

➕ 채권 신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은 채권의 원인, 액수, 담보의 유무 등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됩니다.

➕ 채권조사

법원은 채권조사기간을 정하여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이 없는 채권은 확정되고, 이익이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관리인의 이익철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 조사확정재판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가 신고된 채권에 이익하면 법원이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합니다.

⚙️ 영업 계속 및 재산 관리

관리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산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회생 재원을 확보합니다.

➕ 영업 계속

-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신규 거래 개척
-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
- 근로자 사기 진작 및 인력 이탈 방지

⊕ 재산 보전

- 채고자산 및 설비 관리
- 채권 회수
- 불필요한 자산 매각
- 유휴 부동산 임대

⊕ 비용 절감

- 불필요한 지출 억제
- 조직 슬림화
- 외주 비용 절감
- 재협상을 통한 계약 조건 개선

4.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위원 선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 혹은 직후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조사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밖에 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됩니다. 조사위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황 조사
- 회생절차개시 원인 및 요건 조사
- 회생 가능성 검토
- 조사보고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조사위원의 조사 및 보고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을 면담하고,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영업 상황을 조사합니다. 조사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 현황
- 영업 현황 및 수익성
- 파탄원인 발생 경위
- 회생 가능성 평가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 채권조사의 엄밀성 조사
- 특수관계인채권 등의 존부 및 액수 조사
- 부인대상행위 등 조사(채무자회생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

5.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회생계획안의 의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건을 위한 계획으로서, 회생절차의 핵심입니다. 회생계획안에는 권리의 변경, 채무의 감면 또는 변제방법, 자금조달 방안, 사업구조조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권자 및 제출기한**⊕ 제출권자**

원칙적으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또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1조).

⊕ 제출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회생계획안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 필요적 기재사항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의 권리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채권의 변제
-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임의적 기재사항

-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 정관의 변경
- 이사, 대표이사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신주나 사채의 발행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 해산
- 신회사 설립
- 그 밖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

⊕ 조 편성

회생계획안은 권리의 성질이 다른 권리자를 각각 다른 조로 편성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편성됩니다.

- **(제1조)** 회생담보권자
- **(제2조)** 회생채권자
- **(제3조)** 주주 또는 지분권자(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경우에만 의결권 존재)

⊕ 권리의 변경

각 조별로 권리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변제율)** 채권액 대비 변제받을 비율(예: 회생채권 30% 변제)
- **(변제방법)** 현금 변제, 출자전환, 자산 양도 등
- **(변제기간)** 분할 변제의 경우 변제 시기 및 횟수
- **(변제 자원)** 영업 수익, 자산 매각 대금, 유상증자 자금, 신규 차입금 등

⊕ 담보권의 처리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습니다.

⊕ 변제 자원 확보 방안

- 영업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 유휴 부동산·설비 매각
- 비핵심 사업부문 매각 또는 분할
- 유상증자(신규 투자자 유치)
- 출자전환(채권의 주식 전환)
- M&A(인수합병)
- 신규 차입(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차입)

⊕ 사업구조조정

- 수익성 없는 사업부문 정리
- 핵심 사업 집중
- 조직 슬림화 및 인력 조정
- 생산성 향상 방안
- 신규 사업 추진

⚙️ 회생계획안의 적법성 요건

회생계획안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공정성

같은 조에 속하는 권리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회생계획에 따라 받을 변제액은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진행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현가능성

회생계획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계획은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 적합성

회생계획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6.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심리·결의

⚙️ 관계인집회의 소집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관계인집회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 정해지며, 통상 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로 지정됩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소집을 공고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에게 통지합니다.

⚙️ 회생계획안의 설명 및 심리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이후 조사위원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적법한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음 기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결의

⊕ 결의 방법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조별로 의결합니다. 각 조마다 독립적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 (주주 등 지분권자조)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
- (간이회생(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의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으로 동일)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가결 요건이 완화됨

⊕ 서면 결의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관계인집회일 1~2주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송부하며, 이해관계인은 집회 전까지 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의결권 동의 여부를 의사표시를 밝힐 수 있습니다.

⊕ 부결 시 조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관리인은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다시 결의합니다. 반복적으로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인가

일부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으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그 조의 동의 없이도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 강제인가 고려사항

- 부결된 조 외의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을 것
-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받을 것
-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가 공평·공정하게 취급될 것
- 회생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할 것
-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 강제인가의 효과

강제인가가 되면 부결된 조에 속한 권리자도 회생계획안에 구속됩니다. 다만, 강제인가는 소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서면결의 특칙

법원이 서면결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인집회를 생략하고 서면 결의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이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6. 회생계획 인가요건**1. 인가요건의 개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2. 법정 인가요건**⚙ 절차적 요건****⊕ 적법한 결의**

회생계획안이 각 조별로 법정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액 4분의 3 이상 +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가결되어야 합니다.

⊕ 적법한 소집 및 통지

관계인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었어야 합니다.

⚙ 실체적 요건**⊕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결요건에 맞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회생계획안이 이해관계인 간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에 속한 권리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특정 권리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회생계획이 수행될 수 있을 것

회생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매출 전망, 실현 불가능한 자금조달 계획, 비현실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재무계획의 합리성
- 자금조달 방안의 확실성
- 시장 환경 및 경쟁 상황
- 경영진의 능력 및 의지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보다 권리자에게 유리할 것(청산가치 보장 원칙)

각 권리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받을 변제액은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진행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배당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회생계획의 핵심 요건으로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청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재 시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매각대금 산정
- 매각대금에서 파산절차 비용, 공익채권, 우선채권을 공제
- 잔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

예를 들어, 일반 회생채권이 100억 원이고 청산가치가 20억 원이라면 청산 시 회수율은 20%입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에서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30%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므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15%만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청산가치에 미달하므로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속기업가치 평가

⚙️ 계속기업가치의 의미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란 기업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영위할 경우의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정당화됩니다.

⚙️ 계속기업가치 평가 방법

- **(수익가치 평가[DCF, Discounted Cash Flow])**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정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자산가치 평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계속기업가치 평가 시에는 자산을 급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상대가치 평가)** 유사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만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양자를 비교합니다.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절차 진행이 정당화됨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절차보다 파산절차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임

4. 채권자 동의

⚙️ 채권자 동의의 중요성

회생계획안은 각 조별로 가결되어야 하므로,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작성 전부터 주요 채권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

⊕ 사전 협의

관계인집회 전에 주요 채권자와 비공식적으로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대비 우월성 입증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 시보다 유리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합니다.

⊕ 실현가능성 입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재무계획을 제시하여 회생계획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 이해관계 조정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최대한 많은 동의를 얻습니다.

⚙️ 반대 채권자 설득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면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조에서만 부결되어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조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7.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1. 인가결정

⚙ 인가결정의 선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243조). 인가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회생계획 인가 주문
- 기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인가결정의 공고 및 통지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면 즉시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고는 관보 및 법원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 인가 여부의 결정 확정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입니다. 즉시항고가 없으면 14일 후 인부결정이 확정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심리하여 인부결정을 취소합니다. 즉시항고 심리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이 효력을 발생하고, 채무자와 모든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구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권리자도 회생계획에 구속됩니다.

⊕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권리가 변경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로 변경되며, 그 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됩니다.

⊕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회생채권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회생계획의 수행

⚙ 관리인의 계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개시결정 시 선임된 관리인이 계속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합니다.

⚙ 회생계획 수행의 내용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

⊕ 변제 이행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변제합니다. 통상 분할 변제되며, 변제 재원은 영업 수익, 자산 매각 대금, 신규 차입 등입니다.

⊕ 영업 계속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생산, 판매,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재무계획에 따라 자금을 관리합니다.

⊕ 구조조정 이행

회생계획에서 정한 구조조정을 이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 감축, 사업부문 매각, 조직 개편, 비용 절감 등을 실행합니다.

⊕ 자금 조달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상증자, 출자전환, 신규 차입, M&A 등을 추진합니다.

⚙ 법원의 감독

회생계획 수행 중에도 법원은 계속하여 절차를 감독합니다. 관리인은 정기적으로 회생계획 수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감사(인가 전 CRO)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여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관리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3. 회생절차의 종결

⚙️ 회생절차 종결 사유

회생절차는 다음의 경우 종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 수행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 및 기타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가 정상적인 종결 사유일 것이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등 회생계획안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리인의 신청

관리인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종결됩니다.

⚙️ 종결결정

법원은 종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 종결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고, 채무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복귀합니다.

⚙️ 종결결정의 효력

⊕ 관리인의 임무 종료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업무수행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 법원 감독 종료

법원의 감독이 종료되고,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복귀

회생계획에 의해 변경되었던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변제가 완료된 채권은 소멸합니다.

4. 회생계획 변경

⚙️ 변경 사유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중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예를 들어,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여 변제 재원이 부족하거나, 자산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등입니다.

⚙️ 변경절차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변경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변경안을 심리합니다. 변경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하면 변경된 회생계획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08. 회생절차 폐지 및 후속 조치

1.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사유

회생절차는 다음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 당면 폐지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 불능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입니다.

⊕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 임의 폐지사유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사유

회생절차는 다음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 회생계획 수행 불능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수행 중이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사업이 실패하여 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거나, 주요 채권자가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 회생 목적 달성 불가

기타 사유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3. 폐지결정 및 그 효력

⚙ 폐지결정

법원은 폐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없거나 기각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247조).

⚙ 폐지결정의 효력

⊕ 회생절차의 효력 상실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효력이 소멸합니다.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실효되고, 채권자는 다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임무 종료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업무수행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다만,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제외).

⊕ 권리의 복귀

회생절차로 인하여 변경되었던 권리관계가 원상 회복됩니다. 다만, 이미 이행된 행위는 유효합니다.

4. 폐지 후 파산절차 이행

⚙ 파산 이행 여부 결정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되면,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반면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고 다른 파산 장애사유가 없으면 통상 파산선고를 합니다.

⚙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파산절차는 법인의 청산 절차로서, 법인은 배당 완료 후 소멸합니다.

⚙ 파산 미선고

파산 원인이 없거나 파산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예: 파산 비용 부족),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지 않고 회생절차만 폐지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존속하며,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5. 폐지 방지를 위한 노력

⚙ 적극적인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적극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변제를 이행하며, 사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 주요 채권자와의 협력

주요 채권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어렵습니다.

⚙ 적시 대응

회생계획 수행 중 어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를 방지하면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무 건전성 유지

영업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01. 법인파산 제도 개관

1.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법적 청산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회생과 달리 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인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최근 5개년 법인파산 신청 현황】

연도	신청 건수	인용 건수	기각/취하	인용률
2020년	4,523건	4,102건	421건	90.7%
2021년	4,187건	3,845건	342건	91.8%
2022년	4,892건	4,521건	371건	92.4%
2023년	5,634건	5,198건	436건	92.3%
2024년	6,127건	5,689건	438건	92.9%
평균	5,073건	4,671건	402건	92.0%

※ 자료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20~2024), 2024년은 11월 기준 추정치

【업종별 법인파산 신청 현황(2024년 기준)】

업종	신청 건수	비율	주요 원인
도소매업	1,538건	25.1%	온라인 경쟁 심화, 소비 위축
제조업	1,289건	21.0%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감소
건설업	1,163건	19.0%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증가
음식·숙박업	856건	14.0%	코로나19 후유증, 임대료 상승
운수·물류업	489건	8.0%	유류비 상승, 물동량 감소
기타 서비스업	792건	12.9%	수요 감소, 경영난
합계	6,127건	100%	-

2. 법인파산의 목적

⚙️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

법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채권자 간의 공평한 배당입니다. 일부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채권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법인의 명확한 청산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법인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소멸시킵니다. 이를 통해 법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킵니다.

⚙️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적 면책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vs 법인회생 선택 기준】

판단 기준	법인파산 선택	법인회생 선택
사업 계속 의사	없음 또는 불가능	있음
회생 가능성	없음	있음
자산 규모	소규모 또는 거의 없음	일정 규모 이상
영업 수익	영업 중단 상태	영업 수익 창출 가능
채무 규모	소액 또는 초과채무	대규모지만 변제 가능
고용 인원	소수 또는 전원 퇴직	다수 고용 유지 필요
긴급성	신속한 정리 필요	시간 여유 있음
예상 배당률	낮음(10% 미만)	높음(20% 이상)
법인 존속 필요성	없음	있음(브랜드, 인허가 등)
절차 진행 비용	부담이 적음	부담이 큼

02. 법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법인파산 신청자격

⚙️ 신청권자

법인파산은 다음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법인)

채무자 스스로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법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채권자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해당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 중인 경우,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 채무 초과가 명백해진 경우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42조, 상법 254조 제4항, 민법 제93조 제1항).

⚙️ 파산 원인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파산 원인은 일반적으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로 구분됩니다.

⊕ 지급불능

법인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채무초과

법인의 경우, 채무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회계장부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가 확인되면 채무초과로 인정됩니다.

【파산 원인 비교 : 지급불능 vs 채무초과】

구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정의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채무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판단 기준	현금흐름 중심	재무상태표 중심
주요 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음·수표 부도 영업소 폐쇄 도주·야간도피 채무변제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 부채 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
입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도 증명서 압류·가압류 등기부등본 채권자 진술서 통장 거래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제표(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자산평가서 부채확인서
인정 난이도	상대적으로 쉬움	회계 검증 필요
적용 대상	개인·법인 모두	법인에만 적용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실무상 활용	채권자 신청 시 주로 사용	청산인 신청 시 주로 사용

2. 법인파산 신청방법

⚙️ 관할 법원

법인파산은 채무자(법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울 소재 법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지방 소재 법인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 파산신청서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파산 원인, 법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과 모든 채권자 및 채무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및 신청 시점 기준 재무상태표를 제출합니다.

⊕ 청산보고서(청산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산 중 작성한 청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최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합니다.

⊕ 기타 소명자료

파산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부도증명서, 압류등기부등본, 채무자 파탄 경위 진술서, 임금체불 현황, 세금 체납 현황, 계류 중인 소송 현황, 담보권 설정 현황 등)를 제출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서류명	발급처	유효기간	비고
필수	파산신청서	법원 양식 작성	-	신청 취지 및 이유 기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소	1개월	최신 발급본
	재산목록	채무자 작성	-	전체 재산 상세 기재
	채권자목록	채무자 작성	-	전체 채권자 및 채무액
	대차대조표	회계법인/세무사	-	최근 3개년 + 현재
	손익계산서	회계법인/세무사	-	최근 3개년
	주주명부	채무자 보관	-	지분율 포함
선택	부도증명서	은행/어음교환소	6개월	지급불능 입증 시
	압류등기부등본	등기소	1개월	부동산 압류 시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자 작성	-	임금채권 신고 시
	청산보고서	청산인 작성	-	청산인 신청 시
	이사회 결의서	채무자 보관	-	자기파산 신청 시

⚙ 이사회 결의(자기파산신청의 경우)

법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파산신청을 결의한 후 대표이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사회 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파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03. 법인파산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1. 법인파산 신청비용

⚙ 인지대

법인파산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채권액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인지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파산 관련 각종 문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예납금을 명합니다. 법인의 규모, 재산 상태,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예납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의 보수, 파산절차 진행 비용, 법원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법인의 규모, 재산 및 채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 총 비용

법인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법인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소요기간

⚙️ 파산선고까지의 기간

파산신청 후 법원이 파산 원인을 심사하고 파산선고를 하기까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파산 원인, 예납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파산선고를 합니다.

⚙️ 파산절차 진행 기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하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할 사항이 적은 경우, 파산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어 6개월 이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고 채권자가 많은 경우

환가할 재산이 있고 채권자가 많아 배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재산 환가와 배당에 시간이 소요되어 파산절차가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파산 종결 및 법인 소멸

파산절차가 종결되고 법원이 종결결정을 하면,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법인 등기부에 파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지고, 법인은 말소됩니다.

【법인파산 소요 기간 및 비용(2024년 평균)】

구분	소규모 법인	일반 법인	대규모 법인
신청 → 선고	평균 10일	평균 14일	평균 21일
선고 → 환가 완료	평균 2.5개월	평균 4.2개월	평균 8.5개월
환가 → 배당	평균 1.2개월	평균 2.1개월	평균 3.8개월
배당 → 종결	평균 0.5개월	평균 1.2개월	평균 2.5개월
총 소요 기간	평균 4.7개월	평균 8.0개월	평균 15.3개월
평균 예납금	약 300만 원	약 800만 원	약 3,000만 원 이상
관재인 보수	약 500만 원	약 1,500만 원	약 5,000만 원 이상
총 비용	약 1,000만 원	약 3,000만 원	약 1억 원 이상

3. 예납금 부족 시 처리

법인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환가할 재산이 없어 파산 비용조차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절차는 즉시 종료되고, 법인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4. 법인파산 제도의 장·단점

1. 법인파산의 장점

⚙️ 명확한 법적 청산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고, 법인이 소멸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법인에 대해 추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 간 공정한 처리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합니다. 일부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불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표자의 책임 한정(보증인 없는 경우)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채무를 보증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책임이 분리됩니다.

⚙️ 절차의 신속성(회생절차 대비)

법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신속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등의 복잡한 절차가 없으며, 단순히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는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 강제집행 중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법인파산의 단점

⚙️ 법인의 소멸

법인이 파산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법인은 청산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회생시키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보증 시 개인 책임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저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인 및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파산 기록은 외부에 공개되며, 향후 금융거래나 새로운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배당 불확실성

법인의 재산이 적거나 담보권자가 많은 경우, 일반 채권자들은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자,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 절차 비용

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예납금 등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05. 법인파산절차의 단계별 진행

【법인파산 절차 흐름도】



※ 전체 소요 기간: 평균 6개월~1년 (단순 사안의 경우 3개월, 복잡한 사안의 경우 1년 이상 소요)

1. 파산신청 및 접수

채무자(법인), 채권자, 또는 청산인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파산 원인 심사

법원은 파산 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심문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납명령

법원은 파산 원인이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예납금 납부를 명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및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파산선고

⚙️ 파산선고 결정

예납금이 납부되고 파산 원인이 명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 상실

채무자(법인)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합니다.

⊕ 강제집행 등 중지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이 중지됩니다(다만, 담보권자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

⊕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됩니다.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이 아닙니다.

⚙️ 파산선고 공고 및 통지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공고에는 채권신고 기간, 채권자집회 일시 등이 명시됩니다.

5.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또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6. 파산재단의 조사 및 관리

⚙️ 재산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예금 등)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무상태, 거래내역, 재산 처분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예: 재산 은닉, 편파행위 등)를 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보전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7. 채권 신고 및 조사

⚙️ 채권신고 기간

법원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통상 파산선고 후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채권 신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합니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액, 발생 원인, 담보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 채권 조사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확정

이의가 없는 채권은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채권만이 이후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파산재단의 환가

⚙️ 환가의 의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 환가 방법

파산관재인은 통상 경매,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매각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합니다.

⚙️ 환가 대금 관리

환가로 얻은 금전은 파산재단 계좌에 보관되며, 파산관재인이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9. 채권자집회 및 배당 및 변제

⚙️ 채권자집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배당표 작성

파산관재인은 확정된 채권과 환가 대금을 기초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표에는 각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 배당 및 변제 순위

배당 및 변제는 다음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비용
- 세금(국세 및 지방세)
- 파산관재인의 업무로 발생한 청구권
- 쌍무계약 이행과 해지로 생긴 청구권
- 부양료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일반 파산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일반 파산채권입니다. 예시로는 대여금채권과 상거래채권 등이 있습니다.

⊕ 후순위 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의 이자
-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 파산절차 참가비용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배당 및 변제 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채권자들은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10. 파산절차 종결

⚙️ 종결 사유

파산재단(배당의 대상이 되는 파산재산 전체)의 환가와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계산보고를 하고, 법원은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 종결결정의 효력

종결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법인 등기부에 파산 종결 사실이 등기됩니다.

⚙️ 면책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자체가 소멸하므로 별도의 면책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 대표이사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06. 동시폐지

1. 동시폐지의 의미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치가 파산 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파산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를 즉시 종료합니다.

2. 동시폐지 사유

동시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파산재단이 파산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환가할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 보수, 법원 비용 등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3. 동시폐지 절차

법원은 파산 원인을 심사한 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동시폐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고, 파산절차가 즉시 종료됩니다.

4. 동시폐지의 효과

⚙️ 법인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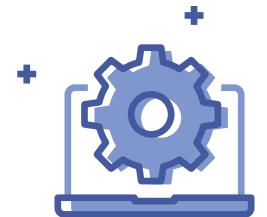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법인 등기부에 파산폐지 등기가 이루어지고, 법인은 말소됩니다.

⚙️ 채권자의 권리 회복

동시폐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채권자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법인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고, 대표이사가 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없음

동시폐지의 경우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01. 개인회생 제도 개관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하).

개인회생은 2004년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06년 「채무자회생법」에 편입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의 목적

⚙️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중한 채무를 탕감하고, 남은 채무를 분할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권자의 권리 보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가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채무자가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복지제도 의존도도 낮아집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적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채무자의 청산 및 면책
재산처분	재산 보유 가능(청산가치 이상 변제 필요)	재산 환가하여 배당
변제여부	3~5년간 일부 변제	변제 없음(면책)
수입요건	계속적·반복적 수입 필수	수입 요건 없음
채무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제한 없음
자격제한	거의 없음	면책 확정 시까지 특정 직업 제한
신용회복	변제 완료 후 신용 회복 빠름	면책 후에도 신용 회복 느림
절차기간	평균 4~6개월(변제 기간 제외)	평균 3~6개월
채권자 이익	일부 변제로 회수 가능	거의 회수 불가
재신청 제한	면책 후 5년간 재신청 불가	면책 후 7년간 재신청 불가

⚙️ 목적의 차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청산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변제 여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통상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면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산이 있으면 환가하여 배당함).

⚙️ 재산 처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산가치보상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함).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자격 제한

개인회생은 자격 제한이 거의 없으나,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5개년 개인회생 신청 현황】

연도	신청 건수	인가 건수	기각/취하	인가율
2020년	98,234건	89,456건	8,778건	91.1%
2021년	87,523건	79,834건	7,689건	91.2%
2022년	92,187건	84,521건	7,666건	91.7%
2023년	104,562건	96,234건	8,328건	92.0%
2024년	118,945건	109,876건	9,069건	92.4%
평균	100,290건	91,984건	8,306건	91.7%

※ 자료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20~2024), 2024년은 11월 기준 추정치

※ 2023년 이후 급증 추세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영향

【신청 사유별 개인회생 현황(2024년 기준)】

신청 사유	건수	비율	주요 특징
신용카드·대출과다	45,578건	38.3%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현금서비스 누적
사업 실패	28,427건	23.9%	자영업·소상공인 경영난
의료비·질병	14,273건	12.0%	중병 치료비, 장기 요양비 부담
부동산투자 실패	11,895건	10.0%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보증·연대채무	8,316건	7.0%	타인 보증으로 인한 채무 승계
실직·소득 감소	7,138건	6.0%	실업, 임금 삭감 등
기타	3,318건	2.8%	도박, 투자 손실, 사기 피해 등
합계	118,945건	100%	—

※ 신청 사유는 중복 선택 가능하므로, 실제 복합적 원인이 많음

※ 2024년 특징: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급증, 자영업자 비율 증가

02.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신청권자

개인회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채무 총액 한도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의 채무액이 위 금액을 넘을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세부 기준	해당 여부
개인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수입가능성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 발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무담보채무 한도	10억 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담보부채무 한도	15억 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변제의사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서류준비	신분증, 소득증명, 채무목록 등 구비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항목에 "예"로 체크되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

※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 검토 필요

【개인회생 변제 계획 주요 통계(2024년 평균)】

구분	평균값	범위	비고
변제기간	4.2년	3~5년	소득 안정성에 따라 조정
월 변제금	약 65만 원	30~150만 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공제 후
총 변제액	약 3,276만 원	1,080~9,000만 원	변제기간 × 월 변제금
총 채무액	약 8,450만 원	3,000~15억 원	무담보 + 담보부 합산
변제비율	평균 38.8%	최소 25% 이상	청산가치보상원칙 적용
면책채무	평균 5,174만 원	2,000~10억 원	변제 완료 후 면책되는 금액
최저생계비	1인 약 125만 원	가구원수별 차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신청비용	약 50~150만 원	법무사·변호사 선임 시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포함

※ 변제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청산가치보상원칙: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함
 ※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이 발생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급여 또는 영업소득이 전혀 없는 자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

무담보채무 10억 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방법

⚙️ 관할 법원

개인회생은 보통 채무자의 재판적 소재지, 즉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지방 거주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청 취지,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현황, 채무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모든 채권자 및 채무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가계수지표

채무자 및 가족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류, 연금수급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소득금액증명원, 지적전산 자료조회결과 등 재산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타 소명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 절차

채무자는 작성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03.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1. 개인회생 신청비용

⚙️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27,000원입니다(2025년 기준).

⚙️ 송달료

개인회생 관련 문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 변호사 비용(선택)

개인회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통상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소요기간

⚙️ 개시결정까지의 기간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기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개인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을 통하여 개시 요건을 심사합니다.

⚙️ 채권자 이의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2개월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이는 채권자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개시결정일 기준으로는 1개월~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신청인의 채권자집회 출석 이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내용이 반영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기간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는 통상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합니다.

⚙️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변제 기간이 종료되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총 소요기간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총 4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변제 기간 3년에서 5년).

04. 개인회생 제도의 장·단점

1.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 탕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채무의 50%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자동차 등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산가치보상원칙에 따라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함).

⚙️ 강제집행 중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제한 없음

개인회생은 자격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가능

개인회생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에서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불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가됩니다.

2. 개인회생의 단점

⚙️ 장기간 변제 의무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면책결정 후 5년 동안은 신용정보에 이력이 남으며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실패 시 면책 불허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다시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엄격한 가계 관리

개인회생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과 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엄격하게 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사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보장원칙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경우 변제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05.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진행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전체 소요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평균 4~6개월, 변제 기간 3~5년 추가

1.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구비서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보정명령 및 회생위원의 면담

⚙ 보정명령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의 채무자 면담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받아 채무자 면담을 통해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태, 수입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3. 개시결정 또는 기각

⚙ 개시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강제집행 등 중지

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 확정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익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관리권 유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관리권을 계속 보유합니다(법인회생과 차이점). 다만, 법원과 개인회생위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기각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4. 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채무자의 개시신청이 접수됨과 함께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통상 변호사 또는 법원사무관이 선임되며, 채무자를 상담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개인회생채권 이의제기절차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목록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익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내용을 채무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6.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변제계획안 작성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변제 기간

통상 3년이나 예외적으로 5년(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변제 총액

채무자가 매월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과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변제 방법

매월 일정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고, 회생위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내용으로 변제방법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7.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 법원의 심사**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 요건

변제계획안이 법에서 정한 형식 및 내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원칙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갚게 될 금액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변제 가능성

채무자의 수입으로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실성 요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법원이 인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인가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 즉시항고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에 대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8. 변제계획 수행**⚙ 변제 개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 회생위원의 감독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변제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주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변제 기간 중 의무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성실 변제

매월 정해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보고

변제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즉시 회생위원 및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추가 채무 금지

변제계획 수행 중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 과도한 지출 금지

사치나 과도한 소비를 해서는 안 되며, 절약하여 변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9. 변제계획안의 변경**⚙ 회생절차 인가 전**

변제 기간 중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직접 수정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 및 제4항).

⚙️ 회생절차 인가 후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10. 면책결정

⚙️ 면책결정의 대상

⊕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단,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청산가치 보장),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의 효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다음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06. 개인회생 절차 폐지

1. 폐지결정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

- ⊕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 ⊕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2. 폐지결정의 효력

⚙️ 회생절차 종료

폐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고, 개시결정으로 인한 효력(강제집행 중지 등)이 소멸됩니다.

⚙️ 채무 원상 회복

채무자는 다시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이미 변제한 금액은 각 채권자의 채권에서 공제됩니다.

⚙️ 개인파산 가능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개인파산 제도 개관

1.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선고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가 과거의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면책됩니다.

2. 개인파산의 목적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개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채무자가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일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채권자가 형평성 있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면, 세금 납부와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 변제 여부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변제 계획이 없습니다(무재산 파산의 경우 배당도 없음).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일정 범위의 자유재산 제외)을 환가하여 배당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제한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법상 공무원, 회사 임원 등)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격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 신청 요건

개인파산은 신청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선택 가이드】

판단 기준	개인파산 선택	개인회생 선택
수입 상황	무직·불규칙적 수입	계속적·반복적 수입 있음
재산 보유	재산 거의 없음	재산 보유하고 있음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없음	일부 변제 가능
채무 규모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직업 상황	자격 제한 직업 아님	자격 제한 우려
신용 회복	장기적 관점	조기 신용 회복 원함
절차 부담	간편한 절차 선호	변제 계획 수행 가능
채권자 관계	채권자 협조 불필요	채권자 협조 원칙적으로 불필요

【최근 5개년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현황】

연도	파산 신청	파산 선고	면책 신청	면책 허가	면책률
2020년	42,156건	40,234건	39,987건	38,456건	96.2%
2021년	38,923건	37,145건	36,892건	35,623건	96.6%
2022년	41,287건	39,567건	39,234건	38,012건	96.9%
2023년	46,734건	44,892건	44,523건	43,234건	97.1%
2024년	52,189건	50,456건	50,123건	48,876건	97.5%
합계	221,289건	212,294건	210,759건	204,201건	96.9%

※ 면책률 = (면책 허가 / 면책 신청) × 100

※ 2024년은 11월까지 집계 기준

※ 파산 선고율 약 96%, 면책 허가율 약 97%로 매우 높은 수준 유지

【개인파산 신청 사유별 현황(2024년)】

신청 사유	비율	건수	주요 특징
신용카드·대출 과다	35.2%	약 18,371건	과소비, 다중채무
사업 실패	28.7%	약 14,978건	자영업, 소규모 사업
실직·소득 감소	18.3%	약 9,551건	경기 침체, 구조조정
의료비·질병	8.9%	약 4,645건	중증질환, 장기치료
보증·연대책임	5.4%	약 2,818건	타인 채무 연대보증
도박·투기	2.1%	약 1,096건	사행성, 투자 실패
기타	1.4%	약 730건	소송 패소, 기타 사유
합계	100.0%	52,189건	—

0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개인파산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채무자(개인)

개인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 채권자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 파산 원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개인의 경우 법인과 달리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 원인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파산 원인 상세 비교 : 지급불능 vs 채무초과】

구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정의	채무자가 변제기의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적용대상	개인 파산의 원인	법인 파산의 원인(지급불능도 포함)
판단기준	현금 흐름, 변제 능력	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
시점판단	현재 시점의 변제 능력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입증방법	채무 내역, 소득·재산 자료, 연체 증명	대차대조표, 재산 목록
예시상황	무직 상태에서 대출 연체	자산 3억 원, 부채 5억 원
개인적용	개인 파산 원인으로 인정	개인 파산 원인으로 불충분
법인적용	법인 파산 원인으로 인정	법인 파산 원인으로 인정

※ 개인: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현금화할 수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

※ 법인: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파산 원인 인정

【지급불능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

고려 요소	세부 내용	입증 자료
채무총액	모든 채무의 합계(원금 + 이자)	채권자별 채무 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변제기 도래 여부	현재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	독촉장, 지급명령, 소장
소득현황	월 소득 및 소득의 계속성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보유재산	현금화 가능한 재산의 가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차량등록증
연체기간	채무 연체 기간 및 횟수	신용정보조회서, 연체 증명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여부	압류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부양의무	부양가족 수 및 최저생계비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신용	추가 대출 가능성	금융기관 대출 거절 증빙

2. 개인파산 신청방법

⚙ 관할 법원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화생법원에, 지방 거주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법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파산 원인, 재산 및 채무 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모든 채권자 및 채무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가계수지표

채무자 및 가족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을 기재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차량등록증 등)를 제출합니다.

⊕ 면책신청서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파산신청 시 면책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타 소명자료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서류명	발급처	비고
필수 서류	① 파산·면책 신청서	법원 양식	본인 작성
	② 채권자 목록	법원 양식	모든 채권자 기재
	③ 재산 목록	법원 양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④ 가계수지표	법원 양식	월 수입·지출 내역
	⑤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최근 3개월 이내
	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상세 증명서
	⑦ 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원	채무 현황 확인
소득 관련	⑧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직전 2개년도
	⑨ 급여명세서	근무처	최근 3~6개월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여부
재산 관련	⑪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 부동산 전부
	⑫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모든 계좌
	⑬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소유 시
채무 관련	⑭ 채권자별 채무확인서	채권자	독촉장, 내용증명
	⑮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사	최근 1년
기타 증빙	⑯ 실업급여 수급확인서	고용센터	실직자의 경우
	⑰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병원	질병 사유 시
	⑱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폐업 시 폐업 증명

※ 법원 및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등록 서류 추가

03. 개인파산 신청비용 및 소요기간

【개인파산 소요 기간 및 비용 통계(2024년 평균)】

구분	무재산 파산	소액 재산 파산	재산 있는 파산
전체비율	약 85%	약 12%	약 3%
소요기간	3~4개월	5~8개월	8~12개월
파산관재인	선임 안 함	선임(간소화)	선임(정규)
법원비용	약 15만 원	약 30만 원	약 50만 원
관재인 보수	없음	약 50만 원	약 100만~300만 원
대리인비용	약 80만~150만 원	약 150만~250만 원	약 250만~500만 원
총 예상비용	약 95만~165만 원	약 230만~330만 원	약 400만~850만 원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 대리인 비용은 사건 복잡도, 지역, 전문가에 따라 차이 발생

※ DIY 신청 시 대리인 비용 절감 가능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각 가능성 높음

1. 개인파산 신청비용

❗ 인지대

개인파산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입니다.

❗ 송달료

파산 관련 문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 예납금(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무재산 파산(동시폐지)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예납금이 필요 없습니다.

❗ 변호사 비용(선택)

개인파산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 비용

개인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무재산 파산)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이고,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2. 개인파산 소요기간

❗ 파산선고까지의 기간(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행위도 없는 경우)의 경우, 신청 후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까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 면책결정까지의 기간(동시폐지의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후 면책심리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총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할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재산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 동시폐지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치가 파산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고,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시폐지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하여 배당합니다. 배당이 완료된 후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파산절차 종결"이라고 표현).

04. 개인파산 제도의 장·단점

1. 개인파산의 장점

⚙ 신속한 면책

개인회생에 비해 면책까지의 기간이 짧습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신청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의무 없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장기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한 후 면책을 받으므로, 그 이후에는 추가 변제 부담이 없습니다.

⚙ 간단한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 비해 신청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정한 급여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 총액 제한도 없습니다.

⚙ 강제집행 중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 채무 면책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됩니다(일부 비면책채권 제외).

2. 개인파산의 단점

⚙ 재산 환가

채무자의 재산(자유재산 범위 제외)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주택,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제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또는 복권될 때까지) 다음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자격이 회복됩니다(복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임용 제한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상의 경우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사유
-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 제한

⚙ 신용정보 등록

파산 및 면책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면책 후 약 5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책 불허 가능성

채무자에게 사기파산, 재산 은닉, 낭비, 도박 등의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사회적 낙인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사실이 관보에 공고되고,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개인파산절차의 단계별 진행

【개인파산 절차 흐름도】



※ 전체 소요 기간: 동시폐지 3~4개월, 재산 있는 파산 6~12개월

※ 동시폐지: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간이 절차(전체의 약 85%)

1. 파산 및 면책 신청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파산 원인 심사 및 심문

⚙️ 파산 원인 심사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파산 원인을 확인합니다.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나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태, 면책 불허사유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 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선고 결정을 하며, 이로써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 상실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상실합니다. 다만, 동시폐지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사실상 재산을 관리합니다(자유재산 범위 내).

⊕ 강제집행 등 중지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 파산채권 확정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됩니다.

⊕ 자격 제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특정 직업에 대한 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면책 확정 시 회복).

⚙️ 동시폐지 결정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이를 동시폐지라고 하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고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재산 환가(재산이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 선임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재산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파적으로 처분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 자유재산 범위 확정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환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유재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재산

- 의복, 침구, 가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동산
- 1개월 간의 생계비
-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신득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은 자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5. 면책 심리

⚙️ 면책심리 기일

파산선고 후 법원은 면책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을 소환합니다. 면책 심리에서는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 면책 불허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사기파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가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자목록에 특정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

사치, 낭비, 도박, 투기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장부 은닉 또는 허위 작성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나 서류를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

⊕ 허위 진술

법원에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설명 또는 검사 거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 내 면책을 받은 경우

⚙️ 면책 허가 또는 불허

법원은 면책 불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으나, 사유가 경미하거나 채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6. 면책결정 확정

⚙️ 즉시항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 결정에 대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없거나 기각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면책의 효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비면책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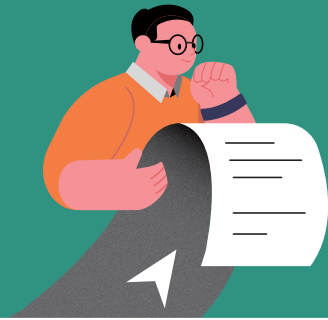
다음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 ⚙️ 조세채권
- ⚙️ 벌금, 과태료, 과징금
-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 부양료 채권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PART 2

폐업 절차 로드맵



I. 폐업절차 개요 및 단계별 구조

- 01 폐업의 의의 및 유형
- 02 폐업절차 단계별 구조도

II. 폐업 분야별 점검사항

- 01 세무 분야 점검사항
- 02 노무 분야 점검사항
- 03 법무 분야 점검사항
- 04 재무 분야 점검사항
- 05 기타 분야 점검사항

III. 업종별 주의사항

- 01 업종별 특수사항
- 02 업종별 폐업 체크리스트
- 03 참고 법령

IV. 실제 사례 기반 FAQ

- 01 세무 관련 FAQ
- 02 노무 관련 FAQ
- 03 법무 관련 FAQ
- 04 재무 및 금융 관련 FAQ
- 05 법인 관련 FAQ
- 06 기타 FAQ



I 폐업절차 개요 및 단계별 구조

01. 폐업의 의의 및 유형

1. 폐업의 의의

폐업(廢業)이란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을 그만두고 사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자발적 폐업과 비자발적 폐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법적·세무적·노무적 절차를 거쳐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된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 종료 후에도 세금, 인·허가, 채무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개년 폐업 현황】

연도	법인 폐업	개인사업자 폐업	전체 폐업	전년 대비 증감률
2020년	78,234개	892,456개	970,690개	-
2021년	82,567개	923,789개	1,006,356개	+3.7%
2022년	89,123개	967,234개	1,056,357개	+5.0%
2023년	95,678개	1,012,567개	1,108,245개	+4.9%
2024년	102,345개	1,078,923개	1,181,268개	+6.6%
평균	89,589개	974,994개	1,064,583개	+5.1%

-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2024년은 1~9월 기준 추정치)
- ※ 코로나19 이후 폐업을 지속 증가 추세
- ※ 개인사업자 폐업이 전체의 약 91.6% 차지
-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음

2. 폐업의 유형

⚙ 자발적 폐업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성 악화, 사업 방향 전환, 은퇴,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 폐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폐업

경영 악화, 채무 과다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폐업

법인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은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로, 폐업신고 및 각종 정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개인으로 존속합니다.

【폐업 유형별 비교】

구분	자발적 폐업	비자발적 폐업	법인 폐업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원인	수익성 악화, 사업 전환, 건강 문제	경영 악화, 채무 과다, 지급불능	경영 악화, 목적 달성, 주주 결의	수익 감소, 시장 변화, 개인 사정
법적절차	폐업신고 → 각종 정리	도산절차 병행 가능	해산 → 청산 → 등기	폐업신고 → 각종 정리
법인격 소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산 완료 시 소멸	해당 없음(개인 존속)
채무정리	자율 변제	도산절차 통한 정리	청산 절차 중 변제	개인 책임으로 변제
소요기간	1~3개월	6개월~2년	3개월~1년	1~2개월
사후책임	채무 변제 의무	파산 시 소멸 가능	청산 완료 시 소멸	개인 채무로 존속

3. 폐업과 도산의 관계

⚙️ 정상 폐업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도산절차 없이 폐업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 도산을 수반한 폐업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도산절차(회생, 파산 등)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 절차와 도산절차가 병행됩니다.

【폐업 vs 도산 결정 가이드】

판단 기준	정상 폐업 선택	도산절차 병행
채무 변제 능력	채무 전액 변제 가능	채무 변제 불가능
자산 현황	자산 > 채무	자산 < 채무
현금 유동성	운영자금 충분	자금 경색 심각
채권자 압박	채권자 협조적	압류·가압류·소송 진행 중
사업 전망	회생 불가능 판단	지급불능 상태
법적 분쟁	분쟁 없음	다수 소송·채권자 이의
처분 가능 재산	재산 처분으로 변제 가능	재산 처분해도 변제 부족
권장 절차	폐업신고 → 채무 변제 → 정리	회생 또는 파산 신청 → 폐업

02. 폐업절차 단계별 구조도

폐업 절차는 크게 사전 준비 단계 → 법적 절차 단계 → 세무 절차 단계 → 노무 절차 단계 → 기타 정리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폐업 후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주의사항
폐업시기 결정	채무 상태, 시장 전망, 자금 유동성 종합 검토	상법, 근로기준법	임직원 통보 최소 30일 전
전문가 상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자문	변호사법, 세무사법	도산 가능성 검토
채권채무 현황 파악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대출금, 보증채무	민법, 상법	숨은 채무 확인
자산목록 작성	부동산, 동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민법	시가 평가
임직원 현황 정리	근로계약서, 퇴직금 추계, 미지급 임금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
계약현황 점검	임대차, 리스, 할부, 공급계약	민법, 상법	위약금 조항 확인
세무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국세기본법	체납 시 재산 압류 가능
인허가 현황	사업 관련 인·허가 목록	개별 인허가법	반납 절차 확인

1. 사전 준비 단계

⚙️ 폐업 결정 및 계획 수립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 사업 계속 가능성 검토(회생 가능성, 자금 조달 가능성 등)
- ⊕ 채무 규모 및 변제 가능성 확인
- ⊕ 폐업 시 예상 비용 산정(퇴직금, 세금, 원상복구 비용 등)
- ⊕ 폐업 일정 수립

⚙️ 채권·채무 정리 계획

폐업 전에 채권·채무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외상 매출금 회수
- ⊕ 외상 매입금 및 미지급금 변제
- ⊕ 대출금 상환 또는 상환 계획 협의
- ⊕ 임차보증금 반환 준비

⚙️ 재고자산 및 설비 처분 계획

폐업 전에 재고자산, 기계설비, 비품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 방법으로는 매각, 반품, 폐기 등이 있습니다.

⚙️ 임직원 통보 및 협의

폐업 사실을 임직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퇴직 일정, 퇴직금 지급 시기 등을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최소 30일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폐업 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주요 업무	체크 항목	관련 기관
① 사전 준비	폐업 결정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계속 가능성 검토 채무 규모 확인 폐업 비용 산정 폐업 일정 수립 	내부 검토
② 채권채무 정리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상 매출금 회수 외상 매입금 변제 대출금 상환 협의 재고·설비 처분 	거래처, 금융기관
③ 임직원 정리	퇴직 통보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전 사전 통보 퇴직금 산정 및 지급 4대 보험 상실 신고 임금채권보장 확인 	고용노동부, 4대보험공단
④ 세무 신고	폐업신고 및 세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시 즉시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정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⑤ 인허가 정리	각종 인허가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업종별 인허가 반납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환경·위생 신고 	관할 행정기관
⑥ 계약 정리	임대차 및 용역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신·전기·수도 해지 보험 계약 해지 원상복구 또는 협의 	임대인, 각 서비스 제공업체
⑦ 법인 해산 및 청산	법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및 등기 채권 신고 및 변제 청산 종결 등기 	법원, 등기소
⑧ 사후 관리	서류 보관 및 사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장부 5년 보관 세무 관련 서류 보관 채무 변제 증빙 보관 신용 회복 계획 수립 	자체 보관

【폐업 단계별 소요 기간 및 예상 비용】

단계	개인사업자	법인(소규모)	법인(중대규모)	주요 비용 항목
사전준비	1~2주	2~4주	1~2개월	전문가 상담비 (30~100만 원)
채권채무 정리	2~4주	1~2개월	2~4개월	재고 처분 손실, 채무 변제
임직원 정리	1~2주	2~4주	1~2개월	퇴직금, 미지급 임금
세무신고	1~2주	2~3주	3~4주	세무사 수수료 (50만~200만 원)
인허가 정리	1주	1~2주	2~3주	행정 수수료 (5만~20만 원)
계약정리	1~2주	2~3주	3~4주	원상복구비 (50만~500만 원)
법인청산	해당 없음	2~4개월	4~8개월	법무사 수수료 (100만~500만 원)
사후관리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	서류 보관 비용
전체 기간	1~2개월	3~6개월	6~12개월	—
총 예상 비용	30만~150만 원	200만~600만 원	500만~2,000만 원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비용 포함

※ 도산절차 병행 시 기간 및 비용 대폭 증가(회생 1~2년, 파산 6개월~1년)

※ 채무 규모가 클수록 채권채무 정리 기간 장기화

※ 퇴직금 및 원상복구비가 가장 큰 비용 비중 차지

※ 법인 청산의 경우 청산 절차 복잡도에 따라 기간·비용 변동 큼

2. 법적 절차 단계(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등)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잔여자산이 전혀 없다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등기를 한 뒤 8년이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청산간주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법인)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로 이루어집니다. 해산결의 후 청산인을 정합니다.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법인)

청산인은 해산결의한 날부터 2주 내에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해산사유 등 신고(법인)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친 후 법인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사유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신문공고(법인)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내에 공고방법으로 정한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해산공고를 합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것입니다.

⚙️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법인)

공고된 채권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식 수에 따라 각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청산종결등기(법인)

채권자보호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됩니다.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합니다.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고 청산종결등기를 한 법인은 법인등기부가 폐쇄되며 법인인감증명서가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및 폐업 신고(법인/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허가(예: 식품제조업 허가, 건설업 등록 등)를 관할 관청에 반납하거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법인/개인)

실제 폐업일에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세무 절차 단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 연도의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폐업연도의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정산 및 납부

폐업 시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정산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확인 및 납부

폐업 전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을 수립합니다. 체납 세금은 폐업 후에도 개인(법인 대표)에게 추징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청산 종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일정 및 가산세율】

세목	신고·납부 기한	가산세율	추가 가산세	비고
부가가치세	폐업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당 0.022%	일반과세자 기준
종합소득세	폐업연도의 다음해 5월 말까지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당 0.022%	개인사업자
법인세	폐업일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당 0.022%	법인
원천세	폐업일 속한 달 익월 10일	미납 3%	납부지연 1일당 0.022%	급여·이자·배당 등
지방소득세	각 소득세·법인세와 동일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당 0.022%	소득세·법인세의 10%
재산세	매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미납 3%	납부지연 매월 0.66%	부동산 보유 시

※ 가산세는 본세에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 급증 ※ 신고기한 엄수가 절세의 핵심

4. 노무 절차 단계

⚙️ 근로계약 종료 통지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정산 및 지급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정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시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 폐지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사업장 폐지 신고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구분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처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입사일~퇴직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총 일수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퇴직금액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최소 30일분 이상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연 20%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적립금 지급	DC는 즉시 지급 가능	미지급 시 형사처벌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서	진정·고소 가능	(진정) 행정적 해결 (고소) 형사처벌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

※ 폐업 시 퇴직금 재원 미확보는 대표자 개인 책임

※ 국가가 미지급 퇴직금 일부 대지급(체당금 제도)

5. 기타 정리 단계

⚙️ 임대차계약 해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 금융계좌 정리

사업용 금융계좌를 정리·해지합니다. 법인은 청산 종결 후 법인계좌를 폐쇄합니다.

⚙️ 거래처 및 고객 통지

주요 거래처 및 고객에게 폐업 사실을 통지하고, 미완료 계약이 있는 경우 정리 방안을 협의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청산 종결 등기(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청산 업무가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청산 종결 등기로 법인은 소멸합니다.

【기타 정리 단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주요 내용	관련 기관	예상 비용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 통지,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임대인	원상복구비 50만~500만 원	계약서상 원상복구 범위 확인
공과금 정산	전기·수도·가스·통신 요금 정산	한전,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통신사	미납액 정산	자동이체 해지
금융계좌 정리	사업용 계좌 잔액 정리, 대출 상환	거래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법인 계좌는 청산 후 폐쇄
거래처 통지	외상매출·매입 정산, 재고 반품	주요 거래처	정산 비용	서면 통지 권장
고객 통지	A/S 책임, 환불 정책 안내	고객	환불·보상 비용	소비자 분쟁 예방
재고자산 처분	재고 정리 판매, 폐기	재고 매입처, 폐기물 업체	처분 손실	세무 처리 (폐기 손실 인정)
보험 해지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사	미경과 보험료 환급	해지 환급금 확인
도메인·상표 처리	인터넷 도메인, 상표권 관리	KISA, 특허청	갱신 또는 양도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

II 폐업 분야별 점검사항

01. 세무 분야 점검사항

1. 폐업 전 세무 점검

【폐업 전 세무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관련 서류	유의사항	미이행 시 불이익
세금 신고 현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신고 완료 여부	신고서, 납부확인서	과거 5년치 신고 내역 확인	가산세 및 체납 처분
세금 납부 현황	미납 세금 및 가산세 확인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서	국세·지방세 모두 확인	재산 압류, 출국금지
장부 정리 상태	거래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정리	총계정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장부 백업 필수	세무조사 시 가산세
증빙서류 보관	매입·매출 증빙, 계약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최소 5년 보관 의무	경비 불인정, 추징
경정청구 검토	과다 납부 세금 환급 가능성	경정청구서, 환급 관련 증빙	5년 이내 청구 가능	환급 기회 상실
가산세 및 이자	체납 세금의 가산세 누적액	가산세 산정 내역서	조기 납부로 납부 지연가산세 절감	체납액 급증
세무조사 대비	장부 및 증빙의 정합성 점검	세무조사 대응 자료	수입금액 큰 사업자 주의	추징세액 부과
폐업 신고 시기	세무상 유리한 폐업 시점 검토	폐업신고서	과세기간 말일 고려	세무신고 절차 비효율적 수행 부담

⚙️ 세금 신고 및 납부 현황 점검

폐업 전에 현재까지의 모든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야 폐업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준비

폐업 전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나 매출 변동이 큰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산세 및 이자 확인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되므로, 현재까지의 가산세 및 이자를 확인하고 조기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폐업 시 세무 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전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법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폐업연도의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 신고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세무 관리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환급 세금 수령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하여 수령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폐업 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합니다.

【폐업 후 장부 보관 의무 및 세무조사 대응】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실무 유의사항
장부 보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식부기 의무자) 5년 (간편장부 대상자) 5년 (법인) 10년(상법), 5년(세법)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상법 제33조	전산 장부 파일 백업 필수, 종이 장부 습기 방지 보관
보관 대상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부)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매출·매입장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약서) 임대차, 매매, 용역 계약서 (금융거래)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서류 보관 주의, 세무조사 시 필수 제출
폐업 후 세무조사	폐업 후에도 과거 5년간 세무조사 가능 고액·현금 업종, 탈루 혐의 시 조사 확률 높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폐업 신고는 세무조사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조사 면제 조사 통지 시 세무사 조력 권장
세무조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통지서 수령 즉시 세무사 선임 장부·증빙 정확성 사전 점검 조사 과정 성실 협조 부당한 추징 시 이의신청·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비협조 시 추계과세 위험, 합법적 절세와 탈세의 명확한 구분
추징세액 납부	본세 +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분할납부 가능(담보 제공 시)	국세징수법	일시 납부 곤란 시 분납 신청,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불복 절차	이의신청(90일)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90일) → 행정소송(90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5조, 제68조	각 단계별 기한 엄수, 전문가(세무사·변호사) 조력 필수

02. 노무 분야 점검사항

1. 폐업 전 노무 점검

근로계약 현황 파악

현재 근로 중인 근로자의 수,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근속연수, 급여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폐업 전 노무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관련 법령	산정 기준	유의사항
근로계약 현황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수 파악. 근속연수, 급여 수준, 계약 종료일	근로기준법	전체 근로자 명부 작성	숨은 근로관계 주의 (특수고용, 프리랜서)
미지급 임금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최종 3개월 평균임금	퇴직 전 3년간 청구 가능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1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중간정산 이력 확인 필수
해고예고 수당	30일 전 해고 예고 없는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일용직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퇴직 시 자동 정산
4대 보험 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퇴직일 다음 날 상실	14일 이내 신고 (과태료 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급여·퇴직금 원천징수세 정산 및 신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45조	간이세액표 또는 세액공제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익월 말)
고용보험 상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제15조	이직확인서 발급 (본인 요청 시)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2. 폐업 시 근로자 처리

【폐업 시 근로자 퇴직 처리 절차 및 지급 항목】

처리 단계	주요 내용	지급 항목	지급 기한	관련 법령	미이행 시 제재
① 해고 예고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30일분 통상임금	해고 당일	근로기준법 제2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평균임금 × 근속연수	1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연이자 연 20%,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③ 미지급 임금	급여,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종 근무일까지의 모든 임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서류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없음	퇴직 후 즉시	소득세법 제164조	과태료 300만 원
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해당 없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과태료 500만 원 (신고 지연 시)
⑥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용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 요청 시)	해당 없음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금 지급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지급

퇴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합니다. 임금 체불 시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합니다.

⚙️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 폐지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사업장 폐지 신고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 퇴직금 계산 방법

$$\text{퇴직금} = (\text{1일 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text{재직일수} \div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 중간정산 여부 확인

근로자가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사업장이 퇴직연금(DC형, DB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계정의 잔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우선순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므로 폐업이나 파산·청산 절차에 있더라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03. 법무 분야 점검사항

1. 계약관계 정리

⚙️ 임대차계약 점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해지 조건, 원상복구 의무 등을 점검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급계약 및 용역계약 점검

거래처와 체결한 공급계약, 용역계약 등을 점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 점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점검하고, 해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합니다.

⚙️ 금융계약 점검

대출계약, 리스계약, 할부계약 등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융계약을 점검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기 상환을 진행합니다.

2. 채권·채무 정리

⚙️ 채권 회수

외상 매출금, 대여금 등 회수 가능한 채권은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조치(지급명령, 소송 등)를 고려합니다.

⚙️ 채무 변제

외상 매입금, 차입금, 미지급금 등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 관계 점검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므로, 보증 관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소송 및 분쟁 관리

⚙️ 진행 중인 소송 점검

법인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방안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 등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소송 비용 관리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합니다.

【소송 및 분쟁 관리 체크리스트】

분쟁 유형	확인 사항	해결 방안	비용	주의 사항
거래처 분쟁	외상 대금, 계약 위반 하자보수,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조정 또는 중재	변호사 수임료 10~30% 인지대 (소송가액의 0.5%)	소멸시효 확인 (3~10년) 증거자료 확보
근로자 분쟁	임금 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산재 보상	노동위원회 조정 합의 또는 소송	무료(노동위원회) 변호사 선임 시 200만~500만 원	체불임금 최우선변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임대료 연체	임대인과 협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비용 약 50만 원 소송 시 인지대 +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세무 분쟁	세무조사 추정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	무료(국세청 내부 절차) 조세소송 시 변호사 비용	소멸시효 5~10년 가산세 부담 고려
지적재산권 분쟁	상표권·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	협상 또는 라이선스 계약 특허심판원 심판	심판 청구료 약 100만 원 소송 시 수천만 원 소요	침해 입증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 어려움
형사 사건	사기, 횡령, 배임 조세 포탈	형사합의, 피해 보상 공탁 또는 변제	변호사 수임료 500만~3,000만 원 벌금형 선고 시 벌금 납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 전과 기록 발생

4. 인·허가 및 등록 정리

⚙ 인·허가 반납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허가(예: 식품제조업 허가, 건설업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등)를 관할 관청에 반납하거나 폐업 신고를 합니다.

⚙ 등록 말소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등을 말소합니다. 법인의 경우 청산 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등록을 말소합니다.

【폐업 시 인·허가 및 등록 말소 절차】

구분	관할기관	반납/말소 대상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미이행 시 제재
사업자등록 말소	국세청 (관할 세무서)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즉시 처리 (방문 또는 온라인)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법인등록 말소	법원 (등기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청산인 취임승낙서 청산재무제표	7일 이내	법인 해산 간주 불가 채무 승계 위험
통신판매업 신고 말소	시·군·구청	온라인 쇼핑몰 전화주문 판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신분증	즉시 처리 (온라인 가능)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영업정지 명령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반납	시·군·구청 (보건소)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폐업신고서 영업허가증 원본 시설 철거 확인서	3일 이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위생법 위반 처벌
건설업 등록 말소	시·도청 (건설정책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업 말소신청서 기술인력 해촉 확인서 공사실적 정리	5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정입찰 제재
학원 등록 말소	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학원 폐원 신고서 등록증 원본 학생 명부	즉시 처리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학원법 위반 처벌
환경오염시설 허가 반납	환경청 (지방환경청)	대기오염 배출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업신고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철거 계획 환경영향 평가서	10일 이내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환경법 위반 형사처벌
의료기관 개설허가 반납	시·군·구청 (보건소)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폐업신고서 개설허가증 원본 의료장비 처분 확인서 진료기록부 이관 계획	3일 이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5. 개인정보 및 자료 관리

⚙ 개인정보 파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 중요 문서 보관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중요 문서는 법정 보관기간(통상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세무조사나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및 자료 관리 의무】

구분	보유 주체	파기 대상	파기 방법	보관 기한	미이행 시 제재
고객 개인정보	사업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결제정보	전자파일 (복원 불가능 삭제) 종이문서 (파쇄 또는 소각)	보유 목적 달성 시 즉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근로자 개인정보	사업자	인사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정보	전자파일 (복원 불가능 삭제) 종이문서 (파쇄 또는 소각)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퇴직연금 5년)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류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공급계약서 용역계약서 고용계약서	전자파일 (외장하드 보관) 종이문서 (밀봉 후 보관)	계약 종료 후 5년 (분쟁 가능성 고려)	계약 분쟁 시 입증 곤란, 손해배상 청구 위험
지적재산권 자료	사업자	상표권·특허권 등록증 저작권·디자인권 자료	전자파일 (클라우드 백업) 종이문서 (금고 보관)	권리 소멸 시까지 영구 보관 (양도 시 이전)	권리 침해 시 방어 불가, 자산 가치 입증 곤란
소송관련 자료	사업자	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내용증명 합의서	전자파일 (외장하드 보관) 종이문서 (밀봉 후 보관)	판결 확정 후 10년 (재심 가능성 고려)	재심 청구 시 입증 곤란, 강제집행 불가

6. 지적재산권 관리

⚙️ 상표권 및 특허권 관리

사업자가 보유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인합니다. 폐업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것인지, 양도하거나 포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지적재산권 양도 또는 라이선싱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 권리 유지 비용 관리

상표권, 특허권은 매년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폐업 후 사용하지 않을 권리는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체크리스트】

유형	관리 방법	양도·라이선싱	세무 처리	주의 사항
상표권	상표 등록 현황 확인 갱신 기한 확인 (10년)	양도 또는 사용권 허락 브랜드 가치 평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본세율) 취득가액 입증 필요	미갱신 시 권리 소멸 유사 상표 분쟁 대비
특허권	특허 등록 현황 확인 존속기간 확인 (출원일로부터 20년)	기술 이전 또는 라이선싱 기술평가 기관 활용	양도소득세 과세 기술이전 소득 분리 과세 가능	연차료 미납 시 권리 소멸 침해 소송 위험
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현황 확인 존속기간 확인 (출원일로부터 20년)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 디자인 포트폴리오 구축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	등록료 미납 시 권리 소멸 유사 디자인 분쟁
저작권	저작물 목록 작성 저작권 보호기간 확인	출판권, 복제권 허락 저작물 온라인 판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등록 없이도 권리 발생 침해 입증 자료 확보
영업비밀	핵심 기술, 고객정보 목록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이전 또는 컨설팅 비공개 조건 양도	기술이전 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경쟁업체 이직 금지 조항

04. 재무 분야 점검사항

1. 재무상태 파악

⚙️ 재무제표 작성

폐업 시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를 확인하고, 채무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현금흐름 분석

현재 보유한 현금 및 예금, 향후 예상되는 현금 유입(매출 회수 등)과 유출(채무 변제, 퇴직금 지급 등)을 분석하여 자금 부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자산 평가

재고자산, 기계설비,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처분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재고자산 처리

⚙️ 재고자산 처분 방법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 (매각) 거래처나 도매업자에게 할인 판매
- ⊕ (반품) 공급업체에 반품 가능 여부 협의
- ⊕ (기부)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 (폐기) 판매 불가능한 재고는 폐기 처분

⚙️ 재고자산 처분 시기

폐업 전에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업 후에는 판매 채널이 제한되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장부 정리

처분한 재고자산은 매출로 계상하고, 폐기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여 회계 장부를 정리합니다.

3. 고정자산 처리

⚙️ 기계설비 및 비품 처분

기계설비, 차량, 집기비품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중고시장, 경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리스 및 할부 자산 처리

리스 또는 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여 금액을 상환합니다. 조기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융계좌 및 자금 관리

⚙️ 예금 계좌 정리

사업용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합니다. 폐업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여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출 및 신용카드 정리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의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미결제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합니다.

⚙️ 전자금융 자동이체 해지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등 각종 전자금융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합니다. 미해지 시 폐업 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세무 관련 재무 정리

⚙️ 세금 납부 확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납 세금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환급세액 청구

과다납부한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원천징수세액 환급 등을 확인합니다.

⚙️ 세무조사 대비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성실하게 신고합니다. 특히 폐업 시점의 재고자산, 고정자산 처분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05. 기타 분야 점검사항

1. 공과금 및 통신 정리

⚙️ 전기·수도·가스 요금 정산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모두 정산하고, 관련 계약을 해지합니다.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 통신 요금 정산

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 요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 공공서비스 해지

케이블TV, 보안서비스, 청소용역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해지하고 요금을 정산합니다.

2. 거래처 및 고객 관리

⚙️ 거래처 통지

주요 거래처(공급업체, 판매처 등)에 폐업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미완료 계약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을 협의합니다.

⚙️ 고객 통지

고객에게 폐업 사실을 통지하고, 미완료 주문이나 A/S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선불 결제한 고객이 있는 경우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품권 및 포인트 처리

발행한 상품권이나 포인트가 있는 경우, 사용 기한을 안내하고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온라인 채널 정리

⚙️ 홈페이지 및 쇼핑몰 폐쇄

회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폐업 안내를 게시하고 사이트를 폐쇄합니다. 도메인 계약도 해지합니다.

⚙️ SNS 및 온라인 계정 정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업에 사용하던 SNS와 온라인 계정에 폐업 안내를 게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합니다.

⚙️ 오픈마켓 및 플랫폼 탈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이나 배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하고 정산을 완료한 후 탈퇴합니다.

4. 사업장 정리

⚙️ 원상복구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된 경우, 사업장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재고, 설비, 비품 등)을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 보안 및 안전 조치

사업장을 비우기 전에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하고, 보안장치를 점검합니다.

5. 문서 및 데이터 관리

⚙️ 전자문서 백업

회계프로그램, 고객관리시스템(CRM) 등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백업하여 보관합니다.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나 분쟁 발생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 보관 및 폐기

세무 관련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 법정 보존 기간이 있는 종이문서는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는 파쇄하여 폐기합니다.

⚙️ 보안 및 기밀 유지

고객 정보, 영업 비밀, 기술 자료 등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폐기 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거나 파쇄합니다.

6. 보험 관리

⚙️ 사업자 보험 해지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사업과 관련된 보험을 해지합니다.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 청구합니다.

⚙️ 4대 보험 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납부합니다.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 신청합니다.

⚙️ 단체 보험 해지

임직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 퇴직연금 등 단체 보험을 해지하고, 근로자에게는 개별 전환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7. 기타 행정 절차

⚙️ 면허 및 허가 반납

사업에 필요했던 각종 면허(식품위생, 건설업, 운수업 등)와 허가를 관할 관청에 반납합니다.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원 및 협회 탈퇴

업종별 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경우 탈퇴 신청을 합니다. 회비 미납이 있으면 정산합니다.

⚙️ 우편물 및 택배 정리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택배사에 사업장 폐쇄를 통보합니다. 중요한 우편물(세금 고지서, 소송 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업종별 주의사항

01. 업종별 특수사항

1. 제조업 폐업 시 주의사항

⚙️ 재고자산 처리

제조업은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 등 대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전에 재고자산을 매각, 반품, 기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조기에 처분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 및 금형 처분

제조업은 고가의 기계설비, 금형, 생산라인 등을 보유합니다.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리스·할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고기계 시장이나 경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규제 준수

제조업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업 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정산

제조업은 하도급 거래가 많으므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업(음식점, 카페 등) 폐업 시 주의사항

⚙️ 식자재 재고 처리

음식점, 카페 등은 신선식품 재고가 많으므로 조기에 처분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는 할인 판매하거나 기부합니다.

⚙️ 주방기기 및 인테리어 처분

주방기기(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등)와 인테리어 자산(테이블, 의자, 조명 등)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생 관련 인·허가 반납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관할 보건소에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불 결제 고객 환불

정기권, 쿠폰, 선불카드 등을 판매한 경우 미사용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3. 도소매업 폐업 시 주의사항

⚙️ 상품 재고 대량 처리

도소매업은 대량의 상품 재고를 보유하므로, 폐업 전 재고 정리 세일을 진행하여 최대한 현금화해야 합니다. 처분이 어려운 재고는 반품하거나 폐기합니다.

⚙️ 거래처 외상 매출금 회수

도소매업은 외상 거래가 많으므로, 폐업 전에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반품 및 AS 정책 정리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 및 반품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AS 처리 방안을 마련하거나, 고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4. 건설업 폐업 시 주의사항

⚙️ 공사 진행 중인 현장 정리

건설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폐업 시 진행 중인 공사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거나, 다른 건설업체에 인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하도급업체 대금 정산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므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관할 시·도청에 건설업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사 하자보증 및 보험 처리

준공한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남아있는 경우, 하자보증보험이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받거나, 대체 건설업체를 지정합니다.

5. IT·소프트웨어업 폐업 시 주의사항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처리

IT업체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시 라이선스의 유효성과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고, 소스코드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활용해 계속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IT업체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개인정보 파기 대장을 작성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서버 해지

AWS, Azure, GCP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버 호스팅 계약을 해지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후 완전히 삭제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메인 및 지식재산권 처리

회사가 보유한 도메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은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합니다.

6. 운송업(화물, 택배 등) 폐업 시 주의사항

⚙️ 차량 및 운송장비 처분

운송업은 트럭, 화물차, 택배차량 등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므로, 이를 매각하거나 리스·할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시 할부금 잔액, 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 운송사업 면허 반납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반납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폐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운송 중인 화물 처리

폐업 시점에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화물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배송을 완료하거나 다른 운송업체에 인계합니다.

⚙️ 화물배상책임보험 처리

가입한 화물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고, 폐업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완료합니다.

02. 업종별 폐업 체크리스트

1. 제조업 폐업 체크리스트

- ⊕ 원재료 및 재고자산 처분 완료
- ⊕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매각 또는 처분
- ⊕ 공장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부동산 처분
- ⊕ 환경오염물질 처리 및 배출시설 신고 말소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폐쇄 신고
- ⊕ 납품처 및 거래처에 폐업 통보
- ⊕ 제품 보증 및 AS 계약 처리
- ⊕ 근로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정산
- ⊕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정산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2. 서비스업(음식점, 카페 등) 폐업 체크리스트

-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폐업 신고
- ⊕ 주류판매면허 반납(해당 시)
- ⊕ 남은 식자재 및 주류 재고 처분
- ⊕ 주방기기 및 테이블, 의자 등 비품 매각
- ⊕ 임대차보증금 반환 협의 및 원상복구
- ⊕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 또는 양도
- ⊕ 가스·전기·수도 해지
- ⊕ POS 시스템 및 카드단말기 해지
- ⊕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정산 및 탈퇴
- ⊕ 미사용 식권 및 쿠폰 환불 처리
- ⊕ 근로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정산
- ⊕ 4대 보험 상실 신고
-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3. 도소매업 폐업 체크리스트

- ⊕ 재고자산 처분 계획 수립 및 실행
- ⊕ 거래처 외상 매출금(미수금) 회수
- ⊕ 공급업체 외상 매입금(미지급금) 정산
- ⊕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쿠팡 등) 정산 및 탈퇴
- ⊕ 미배송 주문 처리 및 환불
- ⊕ 반품 및 AS 처리 방안 마련
- ⊕ 창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 ⊕ 차량(배송차량 등) 매각 또는 리스 해지
- ⊕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온라인 판매 시)
- ⊕ 근로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정산
- ⊕ 4대 보험 상실 신고
-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건설업 폐업 체크리스트

- ⊕ 진행 중인 공사 완료 또는 인계
- ⊕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정산
- ⊕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 ⊕ 공사 하자보증보험 처리
- ⊕ 건설기계 및 장비 매각 또는 리스 해지
- ⊕ 공사 현장 사무실 철거 및 정리
- ⊕ 건설업 등록 말소 신고(시·도지사)
- ⊕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해지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종료
- ⊕ 근로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정산
- ⊕ 4대 보험 상실 신고
-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5. IT·소프트웨어업 폐업 체크리스트

- ⊕ 고객 데이터 인계 또는 안전 삭제
- ⊕ 클라우드 서버(AWS, Azure 등) 해지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해지 또는 양도
- ⊕ 유지보수 계약 종료 및 환불 처리
- ⊕ 소스코드 에스스로 기탁(해당 시)
- ⊕ 도메인 및 호스팅 계약 해지

-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정리
- ⊕ 사무실 임대차계약 해지
-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 및 증명서 발급
- ⊕ 근로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정산
- ⊕ 4대 보험 상실 신고
-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6. 운송업(화물, 택배 등) 폐업 체크리스트

- ⊕ 운송 중 또는 보관 중인 화물 처리 완료
- ⊕ 화물차량 매각 또는 할부·리스 계약 해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반납
- ⊕ 화물배상책임보험 해지
- ⊕ 차고지 임대차계약 해지
- ⊕ 주유 카드 및 하이패스 정산
- ⊕ 차량 운행기록 및 정비 기록 정리
- ⊕ 운송 계약업체와의 정산 및 계약 종료
- ⊕ 배차 시스템 및 GPS 장비 해지
- ⊕ 근로자(기사)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정산
- ⊕ 4대 보험 상실 신고
-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03. 참고법령

1. 도산 관련 법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세무 관련 법령

- ⊕ 국세기본법
- ⊕ 소득세법
- ⊕ 법인세법
- ⊕ 부가가치세법
- ⊕ 지방세법
- ⊕ 국세징수법
- ⊕ 지방세징수법

3. 노무 관련 법령

- ⊕ 근로기준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임금채권보장법
- ⊕ 국민연금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고용보험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상법 및 기타 법령

- ⊕ 상법(회사편)
- ⊕ 개인정보 보호법
- ⊕ 공정거래법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환경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IV

실제 사례 기반 FAQ

01 세무 관련 FAQ

Q1 폐업 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2020년 폐업한 A식당은 2023년에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A식당은 폐업 후 장부를 폐기하여 매출과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추계과세로 약 8,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Q2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폐업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통상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

2024년 6월 폐업한 B제조업체는 폐업 과세기간에 원재료를 대량 구매하면서 매입세액이 1,500만 원 발생했으나, 매출세액은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000만 원의 환급 신청을 했고, 2개월 후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Q3 체납 세금이 있는데 폐업할 수 있나요?

A 체납 세금이 있어도 폐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은 폐업 후에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청산 절차에서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하며, 체납액이 많으면 청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C법인은 3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청산 과정에 서 자산을 환가했으나 1억 원만 확보되어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했고, 청산 종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던 나머지 2억 원은 개인 재산으로 납부했습니다.

Q4 법인을 폐업하면 대표이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법인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고, 법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

D법인의 대표이사 E씨는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5,000만 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무서 조사 결과, E씨가 법인 폐업 직전에 법인 재산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E씨는 개인 재산으로 5,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02 노무 관련 FAQ

Q1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다음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 협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
- **(대출 활용)**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 마련
- **(희생·파산 절차)** 희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부라도 정리
- **(대지급금 제도)** 폐업 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F제조업체는 폐업 시 근로자 10명에게 총 1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3개월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F제조업체는 형사고소되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F제조업체 대표에게 체당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Q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G유통업체는 2024년 3월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15명을 즉시 해고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근로감독 결과 G유통업체는 전 직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총 4,5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Q3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A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서면으로 포기 각서를 받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H음식점은 폐업 시 주방장에게 "퇴직금 500만 원을 포기하면 즉시 해고하지 않고 2개월간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주방장이 이를 수락하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주방장이 퇴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퇴직금 포기 각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H음식점에 퇴직금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폐업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 및 퇴직연금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I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폐업 시 '외국인이라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I제조업체는 퇴직금 총 3,200만 원과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되었습니다.

03 법무 관련 FAQ

Q1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이하게 채권 확보
- **(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민사소송 제기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실제 사례

K카페는 폐업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했습니다. K카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Q2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거래처가 외상대금(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최대한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독촉)**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독촉
- **(지급명령)**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 확보
- **(소송)** 지급명령이 효과가 없으면 민사소송 제기
-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거래처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실제 사례

L도매업체는 거래처 M소매점에 3,000만 원의 외상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M소매점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L도매업체는 폐업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M소매점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종 승소했으나 M소매점은 이미 폐업 상태였고, 재산도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Q3 법인이 폐업하면 대표이사의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법인 또는 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며,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N법인은 은행 대출 3억 원에 대해 대표이사 O씨가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N법인이 청산되었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은행은 O씨에게 3억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O씨는 개인 재산으로 1억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2억 원을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Q4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폐업 후에도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에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재창업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아니므로, 타인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청산 등기 후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실제 사례

P베이커리는 20년간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이었으나 폐업했습니다. 폐업 1년 후 대표이사 Q씨는 동일한 상호로 근처에 새로운 베이커리를 개업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기존 고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P베이커리 2호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Q5 폐업 후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나요?

A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폐업 후에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폐업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청산절차에서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범칙금, 환경 관련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은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심됩니다.

실제 사례

R운송업체는 폐업 당시 과적 범칙금 500만 원과 환경 과태료 3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폐업 후 2년이 지나 대표이사 개인 계좌가 압류되었고,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총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Q6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폐업 전후에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며, 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폐업 후 법인이 청산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S건설업체는 아파트 하자보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비용 5,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S건설업체는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3,0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04 재무 및 금융 관련 FAQ

Q1 재고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고자산이 있다면 폐업 전에 최대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 방법으로는 할인 판매, 도매업체 매각, 온라인 플랫폼 판매 등이 있습니다. 처분하지 못한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을 폐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폐기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폐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폐기 증명서 확보
- **(기부)** 사회복지시설, 구호단체 등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 수령
- **(보관)** 개인적으로 보관하되, 세무상 처리 필요

실제 사례

U류업체는 폐업 시 재고자산 5,000만 원 상당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할인 판매하여 2,000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무상 손금 처리했습니다.

Q2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또는 상환 조건 변경 협상**
- **(개인회생)**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분할 상환
- **(개인파산)** 채무를 면제받되, 신용 불량 등 불이익 발생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폐업하기보다는 사전에 재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

W제조업체는 은행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대표이사 X씨가 연대보증을 썼으므로 개인에게 5억 원이 청구되었고, X씨는 개인 재산으로 2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3억 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억 원으로 감면받고 5년간 분할 상환했습니다.

05 법인 관련 FAQ

Q1 법인 청산과 폐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폐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청산은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이 폐업 후에도 법인격은 유지되므로, 법인을 완전히 종료하려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청산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도 남아있게 됩니다.

-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및 등기
- 채권·채무 정리 및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 등기

실제 사례

J법인은 2020년에 폐업했으나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2024년 세무서에서 2020~2023년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1,200만 원을 부과했고,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J법인은 뒤늦게 청산 절차를 진행했으나 가산세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습니다.

Q2 청산 중에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청산 절차 중에는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된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 종결 후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채권자는 잔여자산을 분배받은 주주나 청산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범위는 각 주주가 분배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산 시 모든 채무를 조사·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K법인은 2023년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 2억 원을 주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K법인이 2022년에 공급받은 원자재 대금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채권자는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각 주주가 분배받은 금액 비율에 따라 5,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3 휴면법인으로 두면 안 되나요?

A 휴면법인은 사업을 하지 않지만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법인세 신고 의무(결손 신고 포함)와 법인登記 관리 의무가 계속됩니다. 또한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최종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휴면법인으로 두는 것보다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세금 및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L법인은 2018년 폐업 후 청산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두었습니다. 2018~2024년까지 매년 법인세 결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4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 가산세 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결정을 했으나, L법인은 이를 몰랐고 해산 등기도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06 기타 FAQ

Q1 사업자 신용등급이 폐업 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용등급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폐업 시 채무를 정상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등급은 법인 자체에 귀속되나,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P씨는 개인사업자로 폐업하면서 거래처 외상 대금 1억 원과 은행 대출 5,000만 원을 미상환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최하위)으로 하락했고, 이후 5년간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P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Q2 폐업 후 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 즉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의 체납 세금이나 미지급 채무가 있으면 새로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리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해야 법인격이 소멸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Q씨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폐업한 뒤 3개월 만에 새로운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음식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 2,000만 원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새 사업장의 매출을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Q씨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Q3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제도로,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월 평균 소득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법인을 청산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폐업 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R씨는 개인사업자로 2020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024년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월 180만 원씩 7개월간 총 1,26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가 월 평균 12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Q4 폐업 과정에서 전문가(세무사, 법무사 등)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폐업 절차는 세무·노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법인 청산) 법무사 또는 변호사
- (세무 정산 및 세무조사 대응) 세무사
- (근로자 정리해고 및 퇴직금 정산) 노무사
- (채권·채무 분쟁) 변호사

실제 사례

S법인은 대표이사가 청산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산 등기를 잘못 처리해 법원에서 반려되었고, 청산 보고서 작성 또한 미흡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무사에게 의뢰해 청산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청산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Q5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폐업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G유통업체는 급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사전 예고 없이 폐업하면서 근로자 20명을 즉시 해고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G유통업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해고예고수당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6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

H병원 폐업 과정에서 계약직 간호사 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해당 간호사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4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에 간호사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H병원은 퇴직금 총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Q7 폐업 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는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폐업 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P건설업체는 폐업 이후 근로자 J씨가 재직 중 발생한 허리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P건설업체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였고, 근로복지공단은 J씨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한 후 P건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P건설업체는 약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PART 3

관계기관 연락처



-
- I. 세무 관련 기관
 - II. 노무 및 사회보험 관련 기관
 - III. 법원 및 법률지원 기관
 - IV. 중소기업 지원기관
 - V. 기타 관련 기관
 - VI. 이용 안내



I. 세무 관련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없이 12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www.nts.go.kr
서울지방국세청	02-2075-5114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7	www.nts.go.kr/call/seoulcall.asp
중부지방국세청	042-715-51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www.nts.go.kr/call/jbcall.asp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온라인 신고·납부	www.hometax.go.kr
지방세 위택스	1661-6800	온라인 신고·납부	www.wetax.go.kr

II. 노무 및 사회보험 관련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88-0075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www.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www.nps.or.kr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고용보험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신고	www.ei.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번없이 1566-0658	온라인 통합신고	www.4insure.or.kr

III. 법원 및 법률지원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02-530-128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slb.scourt.go.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24(한국프레스센터)	www.ccr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17(서울중앙지부)	www.klac.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10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충정로 2가)	www.kicpa.or.kr
대한변호사협회	02-2087-7798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대한변협회관 2층	www.koreanbar.or.kr

IV.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11동)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www.semas.or.kr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www.kbiz.or.kr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ibo.or.kr

V. 기타 관련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www.fss.or.kr
공정거래위원회	국번없이 1372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2동	www.ftc.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번없이 118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www.pipc.go.kr
한국환경공단	1800-883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www.keco.or.kr
정부24(민원24)	국번없이 110	온라인 민원서비스	www.gov.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551-3060	온라인 법령정보	www.law.go.kr

VI. 이용 안내



전화 상담 시간

대부분의 기관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상담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점심시간(12시~1시) 제외



방문 상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권장하며,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



온라인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와 납부 처리 가능



법률 상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가능



중소기업 지원

폐업 및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주의사항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연락처 및 주소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 이전이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리 및 폐업 실무 가이드북

발행일	2026년 5월
펴낸곳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www.rechallenge.or.kr 055-751-9624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원고	정일우 변호사(정일법률사무소)
감수	박성준 회계사(박성준 세무회계사무소)
디렉팅	김미경
제작	디자인서가(02-735-1711)

※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